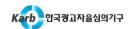


2025. 9월 심의결정 통계

1. 업종별 심의내용

결정구분 업종	계	주의 및 경고	광고수정	주의·경고 및 광고수정	광고중지	관계기관 통보	기 각
기초재	0	0	0	0	0	0	0
식품·음료	13	0	3	10	0	0	0
가정용품	0	0	0	0	0	0	0
제약(의료기기)	1	0	0	0	1	0	0
건강관련용품	4	0	3	1	0	0	0
화장품·세제	2	0	0	2	0	0	0
일반산업기기	0	0	0	0	0	0	0
정밀사무기기	0	0	0	0	0	0	0
전기ㆍ전자	0	0	0	0	0	0	0
수송기기	0	0	0	0	0	0	0
화학 · 공업	0	0	0	0	0	0	0
건설 • 건재	2	0	2	0	0	0	0
출판ㆍ교육	1	0	0	0	1	0	0
의류·섬유	0	0	0	0	0	0	0
유통	1	0	1	0	0	0	0
금융 · 보험 · 증권	0	0	0	0	0	0	0
서비스·오락	0	0	0	0	0	0	0
관공서 · 단체	0	0	0	0	0	0	0
의료	15	0	0	0	15	0	0
그룹·기타	13	0	7	1	5	0	0
Я	51	0	16	14	21	0	0



2. 심의결정이유별 내용

결정이유	계	
공정성·윤리성·합법성·인간의 존엄성·진실성 위반 표현(4~7조)		
광고의 품위상실, 선정성 표현(8조, 18조)		
광고주 불표시(9조)		
소비자 오도 표현(10조)		
주장의 무입증(11조)		
추천, 보증(12조)		
자료 등의 인용(15조)		
부당비교 및 배타적 표현(16~17조)		
비과학적 생활태도 조장(19조)		
소비자 조사(20조)	0	
광고에 부적당한 언어사용(22조)	0	
어린이·청소년, 어린이 보호(23조, 24조)		
경품·할인특매, 사행심 조장, 미끼광고(28조, 29조)		
광고물의 식별 불가능(30조)		
식품광고의 소비자 오인 표현(31조)		
주류·담배광고의 부당표현(32조, 33조)		
효능효과 과신·과장(34조)		
화장품광고의 소비자 오인 표현(35조)		
의약품 및 의료 광고 소비자 오도 표현(36조, 37조)		
금융·투자자문업 광고 소비자 오도 표현(38조, 39조)		
통신판매 광고 과장 표현(40조)		
학원, 학습지 등 광고 과장표현(42조, 43조)		
대리점 모집 광고 과장표현(44조)		
부동산 광고 소비자 오도 표현(45조)		
영화·비디오 광고 부당 표현(46조)		
기타	0	
Л	146	

※결정이유 건수가 결정 건수보다 많은 것은 한 결정에 2개 이상의 결정이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.